

의안번호	제 43 호
의결연월일	2004. 10.

사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자	사천시장
제출년월일	2004. 10. 4

법무통계담당주사 심사필

사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43 호
----------	--------

제 출 일 자	2004. 10. 4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령의 개·폐 등으로 이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조항 및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인용법령 명칭 및 조문에 맞게 정비

-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
-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 6조
⇒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
-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 ⇒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담당관실, 민원지적과, 도시건축과

라. 기 타

- 1)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2) 입법예고 : 해당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사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를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로 하고, 같은조같은항같은호중 “연차별” 을 각각 “단계별”로 하며, 같은조제4항제3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 를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를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로 하고, 같은조같은항같은호중 “연차별” 을 각각 “단계별”로 하며 같은조같은항제4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 를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로, 같은조제2항제2호 다목중 “도시계획법” 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같은조같은항제3호중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 를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 (공원점용허가) ① (생 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 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4. (생 략) <p>② ~ ③ (생 략)</p> <p>④ (생 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 략) 3.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p>제4조 (녹지점용허가) ① (생 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p>제6조 (-----) 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 단계별.....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 단계별..... 4. (현행과 같음)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현행과 같음) 3.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 <p>제4조 (.....) 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 단계별.....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 단계별.....

관계법령발췌

도시공원법

第4條 (造成計劃의 立案·決定) ①都市公園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決定된

때에는 그 都市公園이 위치한 行政區域을 관할하는 市長(特別市長 및 廣域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郡守는 그 都市公園에 관한 造成計劃을 立案하여야 한다.

②2이상의 行政區域에 걸치는 都市公園 또는 같은 도시지역안에서 行政區域을 달리하는 都市公園에 대하여는 관계市長 또는 郡守가 共同으로 第1項의 造成計劃을 立案하거나 協議에 의하여 立案者를 정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한 경우에 特別市 또는 廣域市와 2이상의 道와 관련되는 都市公園에 대한 것은 建設交通部長官에게, 기타의 都市公園에 대한 것은 道知事에게 그 裁定을 申請할 수 있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이 있을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

⑤造成計劃은 도시관리계획으로 決定하여야 한다. 決定된 造成計劃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6條 (公園管理廳이 아닌 者의 都市公園 및 公園施設의 設置·管理) ①市長

또는 郡守외의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과 동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을 設置할 수 있으며, 그 設置한 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을 관리할 수 있다

②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公園을 管理하는 市長 또는 郡守(이하 "公園管理廳"이라 한다)는 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의 管理를 公園管理廳이 아닌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③公園管理廳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園管理廳이 아닌 者에게 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의 設置를 認可하거나 관리를 委託한 때에는 그 내용을 公告하여야 한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의 設置의 認可 또는 管理委託를 받은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園管理廳의 權限을 代行할 수 있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 또는 郡守외의 者가 設置한 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65조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都市計劃事業에 의하여 設置되는 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7條 (兼用工作物の 管理) ①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과 河川·道路·上下水道· 기타 施設이나 工作物(이하 "다른 工作物"이라 한다)등이 相互 그 效用을 겸하는 경우에는 公園管理廳과 다른 工作物の 管理者는 協議에 의하여 그 管理 方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工作物の 管理者가 非行政廳인 경우로서 都市公園을 管理하는 경우에는 都市公園에 관한 工事와 維持·修繕 이외의 管理는 행할 수 없다.

②公園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한 때에는 그 內容을 公告 하여야 한다.

③第6條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工作物の 管理者가 都市 公園 또는 公園施設을 管理하게 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8條 (都市公園의 占用許可) ①都市公園안에서 公園施設 이외의 施設·建築物 또는 工作物을 設置하거나 土地의 形質變更, 竹木의 伐採, 栽植이나 土石의 採取등의 行爲를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園 管理廳의 占用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公園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申請이 있을 때에는 公園造成計劃 에의 저촉여부를 확인한 후 占用事由가 불가피하고 公衆의 이용에 支障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許可할 수 있으며 土地所有者가 許可申請을 한 경우에는 他에 優先하여 許可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公園을 占用할 수 있는 對象 및 占用의 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公園管理廳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買受 請求가 있는 地目이 垡인 土地(당해土地에 있는 建築物 및 定着物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를 買受하지 아니하기로 決定하거나 買受決定을 통지한 날부터 2年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土地를 買受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土地의 所有者는 占用許可를 받아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築物 또는 工作物을 設置할 수 있다. 이 경우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9條 (原狀回復)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公園의 占用許可를 받은 者는 그 占用期間이 滿了되었거나 占用을 廢止한 때에는 遲滯없이 都市公園을 原狀으로 回復하여야 한다. 다만, 原狀으로 回復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公園 管理廳의 承認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2條의2 (綠地의 占用許可) ①綠地안에서 綠地의 造成에 필요한 施設외의 施設·建築物 또는 工作物을 設置하거나 土地의 形質變更, 竹木의 伐採·栽植이나 土石의 採取등의 行爲를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綠地를 관리하는 市長 또는 郡守(이하 "綠地 管理廳"이라 한다)의 占用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綠地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申請이 있을 때에는 占用이 綠地의 設置目的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造成 및 유지·관리에 支障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許可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綠地를 占用할 수 있는 대상 및 占用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第9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綠地의 占用許可를 받은 者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⑤綠地管理廳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買受請求가 있는 地目이 垚인 土地(당해土地에 있는 建築物 및 定着物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를 買受하지 아니하기로 決定하거나 買受決定을 통지한 날부터 2年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土地를 買受하지 아니하는 경우 所有者는 占用許可를 받아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築物 또는 工作物을 設置할 수 있다. 이 경우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개정 1999.4.9>)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주·전선·변전소의 설치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공동구의 설치
3. 도로·교량·철도 및 궤도·노외주차장·선착장의 설치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5. 경찰관파출소·초소·표지·등대의 설치
6. 삭제<1990·9·15>
7. 방화용저수조·지하대피시설의 설치
8. 통신시설·축성시설 기타 국방부장관이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 8의2.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소유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 8의3.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사무소, 창고시설, 동물관련시설중 축사 및 식물관련시설로서 자기 소유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 8의4. 공원관리청 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을 관리하는 자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9.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
- 9의2.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
10.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를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가설공작물의 설치
11.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 11의2.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12.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

13. 제1호 내지 제5호와 제7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한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 ②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7호·제8호의2·제8호의3 및 제9호의 시설의 설치
 2. 농업 또는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
 3.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4.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 4의2.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 4의3. 당해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5. 제1호의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도시계획법 <1998.5.24 법률 제5982호>

第2條 (定義)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都市計劃"이라 함은 都市計劃區域안에서 都市의 健全한 발전을 도모하고 公共의 安寧秩序와 公共福利의 增進을 위한 土地利用·交通·衛生·環境·産業·保安·國防·厚生 및 文化등에 관한 다음의 計劃을 말한다.
 - 가. 都市計劃區域 및 第2章第2節(第17條 내지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地域·地區·區域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計劃
 - 나. 道路·廣場·駐車場·自動車停留場·鐵道·軌道·索道·河川·運河·港灣·空港·綠地·公園·運動場·遊園地·觀望塔·公共空地·公用의廳舍·學校·圖書館·市場·水道·下水道·共同溝·屠殺場·共同墓地·火葬場·廢棄物處理施設·水質汚染防止施設·電氣供給設備·貯水池·防風設備·가스供給設備·油類貯藏 및 送油設備·流通業務設備·防水設備·防火設備·砂防設備·防潮設備·熱供給設備 其他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施設의 設置·整備·改良에 관한 計劃
 - 다. 土地區劃整理事業, 一團의 住宅地造成事業, 市街地造成事業, 一團의 工業用地造成事業 또는 再開發事業에 관한 計劃

第12條 (都市計劃의 決定) ①都市計劃은 建設部長官이 職權 또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立案者의 申請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地方議會의 의견을 듣고(申請人이 미리 해당 地方議會의 의견을 들어 申請한 경우를 제외한다) 中央都市計劃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이를 決定한다. 決定된 都市計劃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輕微한 事項의 變更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改正 1972·12·30>

第14條의2 (年次別 執行計劃의 樹立) ①市長 또는 郡守는 第2條第1項第1號 나目 및 다目에 관한 都市計劃중 道路·廣場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事項에 관한 都市計劃에 대하여는 第12條第4項에 의한 都市計劃의 決定告示가 있는 날로부터 2年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年次別 執行計劃(이하 "執行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야 한다. 第11條第1項 但書에 의하여 建設部長官이 都市計劃을 立案한 경우에는 建設部長官이 그 執行計劃을 樹立하여 해당 市長 또는 郡守에게 送付할 수 있다.

②第1項에 의하여 執行計劃을 樹立하여야 할 都市計劃의 規模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市長 또는 郡守는 第1項에 의하여 執行計劃을 樹立하였거나 建設部長官으로부터 執行計劃을 送付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公告된 執行計劃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輕微한 事項의 變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市長 또는 郡守는 第3項에 의하여 執行計劃을 公告한 경우 그 執行計劃이 公告된 土地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假設建築物의 建築을 許可할 수 있다. 이 경우 市長 또는 郡守는 당해 土地에 대한 都市計劃事業이 施行될 때에는 그 施行豫定日 3月전까지 無償으로 假設建築物의 撤去등 原狀回復을 命하여야 한다. 다만, 原狀回復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本條新設 1981·3·31]

도시계획법 <전문개정 2000.1.28 법률 제6243호>

第58條 (段階別執行計劃의 수립) ①特別市長·廣域市長·市長 또는 郡守는 都市計劃施設에 대하여 都市計劃施設決定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年 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財源調達計劃·補償計劃 등을 포함하는 段階別執行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建設交通部長官 또는 道知事が 직접 立案한 都市計劃인 경우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道知事는 段階別執行計劃을 수립하여 해당 特別市長·廣域市長·市長 또는 郡守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③段階別執行計劃은 第1段階執行計劃과 第2段階執行計劃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年 이내에 施行하는 都市計劃施設事業은 第1段階執行計劃에, 3年후에 施行하는 都市計劃施設事業은 第2段階執行計劃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特別市長·廣域市長·市長 또는 郡守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段階別執行計劃을 수립하거나 송부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⑤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公告된 段階別執行計劃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인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송부할 수 있다.

③단계별집행계획은 제1단계집행계획과 제2단계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집행계획에, 3년후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송부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공고된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02.2.4 법률 제6655호>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 및 도시계획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건축법

第15條 (假設建築物) ①市長·郡守·區廳長은 都市計劃施設 또는 都市計劃施設豫定地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의 범위 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假設建築物의 建築을 許可할 수 있다.

第35條 (道路의 지정·廢止 또는 변경) ①許可權者는 第2條第11號 나目的 規定에 의하여 道路의 위치를 지정·公告하고자 할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道路에 대한 利害關係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利害關係人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고 建築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道路를 지정할 수 있다.

1. 利害關係人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利害關係人의 同意를 얻기가 곤란하다고 許可權者가 인정하는 경우
2. 住民이 장기간 通行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通路로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許可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한 道路를 廢止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道路에 대한 利害關係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당해 道路에 편입된 土地의 所有者, 建築主등이 許可權者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道路의 廢止 또는 변경을 申請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許可權者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道路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道路管理臺帳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第36條 (建築線의 지정) ①道路와 接한 부분에 있어서 建築物을 建築할 수 있는 線(이하 "建築線"이라 한다)은 垜地와 道路의 境界線으로 한다. 다만, 第2條第11號의 規定에 의한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道路인 경우에는 그 中心線으로부터 당해 소요너비의 2分の 1에 상당하는 水平距離를 後退한 線을 建築線으로 하되, 당해 道路의 반대쪽에 傾斜地·河川·鐵道·線路敷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傾斜地등이 있는 쪽 道路境界線에서 소요너비에 상당하는 水平距離의 線을 建築線으로 하며, 道路의 모퉁이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線을 建築線으로 한다.

②市長·郡守·區廳長은 市街地안에 있어서의 建築物의 位置를 整備하거나 環境을 整備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建築線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市長·郡守·區廳長은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線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第37條 (建築線에 의한 建築制限) ①建築物 및 담장은 建築線의 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地表下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道路面으로부터 높이 4.5미터이하에 있는 出入口·窓門 기타 이와 유사한 構造物은 開閉時에 建築線의 垂直面을 넘는 構造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축법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 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36조 및 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도시계획예정도로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내지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시계획시설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하·지상·수중·수상 및 공중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폐지 2002.12.30 건설교통부령 제343호>